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11. 14.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4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7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2000. 11. 1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채진목

가. 제안이유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등장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을 재정비 보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적법한 자치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동조례 제5조관련 별표를 전문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의 권한 사무중 등에 존치되는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등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 (제5조관련, 별표)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장증 회수사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무
- 시체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 농지법에 의한 농지원부 작성·비치 및 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사무

○ 구청장의 권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그간 개정·신설된 법령 내용

에 따른 관련 위임사무를 재정비·보완함. (제5조관련, 별표)

-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 기생충 예방을 위한 사무
-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 의원 등(위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사무
- 접골사, 침·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
-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무
-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
-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 약국에 관한 사무
-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사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동에 존치되는 사무에 대하여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보건소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등이 관련 법령 등이 개정·신설됨에 따라 재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위임사무를 규정한 동조례 제5조관련 별표내용을 전문개정방식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동사무소 처리사무는 667개 사무이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구분청으로 403개 사무가 이관되면 동사무소 처리사무는 주민등록, 민방위, 사회복지 등 219개 존치사무와 법령상 동장권한으로 되어 있는 가축통계조사, 주택철거·멸실 사실확인 등 10개 법령사무 및 선거, 인구주택 총조사, 재난관리 등 26개 구·동 공동수행사무 등을 비롯하여 255개 사무로 조정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0. 1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등장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을 재정비 보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적법한 자치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동조례 제5조관련 별표를 전문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구청장의 권한 사무중 동에 존치되는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등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제5조관련, 별표)

- (1)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장증 회수사무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무
- (4) 시체매장· 화장 또는 개장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 (5) 농지법에 의한 농지원부 작성·비치 및 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사무

나. 구청장의 권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그간 개정·신설된 법령 내용에 따른 관련 위임사무를 재정비·보완함.(제5조관련, 별표)

- (1)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 (2) 기생충 예방을 위한 사무
- (3)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 (4) 의원등(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사무
- (5) 접골사, 침·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
- (6)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무

- (7)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
- (8)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 (9) 약국에 관한 사무
- (10)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사무
- (1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3. 개정근거

- (1) 지방자치법(2000.1.12 법률 제6115호) 제95조
- (2) 의료보호법(1999.9.7 법률 제6024호) 제7조
- (3) 의료보호법시행규칙(2000.9.30 보건복지부령 제177호) 제6조제2항 및 제9조
- (4) 장애인복지법(1999.2.8 법률 제5931호) 제29조 등
- (5)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1999.12.31 보건복지부령 제141호) 제3조, 제5조 내지 제9조, 제21조 및 제24조
- (6) 노인복지법(2000.1.12 법률 제6124호) 제11조 및 제13조
- (7) 노인복지법시행령(2000.2.28 대통령령 제16737호) 제17조
- (8) 노인복지법시행규칙(1999.8.25 보건복지부령 제130호) 제2조 및 제3조
- (9)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5조 및 제5조의2.
- (10)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9.30 대통령령 제15486호) 제1조
- (11) 농지법(2000.1.28 법률 제6241호) 제51조 및 제52조
- (12) 농지법시행령(2000.3.24 대통령령 제16757호) 제71조
- (13) 농지법시행규칙(2000.3.27 농림부령 제1360호) 제50조 내지 제53조
- (14) 전염병예방법(2000.1.12 법률 제6162호) 제7조의2 등
- (15) 전염병예방법시행령(2000.8.28 대통령령 제16961호) 제21조 등
- (16)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2000.10.5 보건복지부령 제179호) 제4조 등
- (17) 기생충질환예방법(1998.12.30 법률 제5609호) 제4조 및 제6조
- (18) 결핵예방법(1999.2.8 법률 제5850) 제19조 등

- (19) 결핵예방법시행규칙(1999.6.30 보건복지부령 제122호) 제10조 등
- (20) 의료법(2000.1.12 법률 제6157호) 제30조 등
- (21) 의료법시행령(2000.6.23 법률 제16854호) 제33조 내지 제35조
- (22) 의료법시행규칙(2000.10.2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제22조 등
- (23)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1998.9.23 보건복지부령 제82호) 제17조
- (2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1999.2.8 법률 제5841호) 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 (25)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26호) 제2조등
- (26)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9.8.13 보건복지부령 제124호) 제2조, 제13조 및 제15조
- (27) 약사법(2000.8.5 법률 제6272호) 제16조 등
- (28) 약사법시행규칙(2000.9.8 보건복지부령 제175호) 제8조 등
- (29)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1996. 5. 18 보건복지부령 제125호) 제3조

4. 조 례(안) : 따르불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생략 :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중 일부사 두에 대하여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권한위임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 내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 거 입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입법예고를 생략함.
- (2)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한다.

제5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u>마포구청장</u>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의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p>
<p>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p>	<p>제2조(위임의 기준 등) <u>구청장</u>----- ----- ----- ----- ----- -----</p>

(별표)

위 입 사 무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기 법 령	수입기관
행정관리국 (총 무 과)	1. 공무원에 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구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보임용해제 포함) · 의원면직 나.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전보 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제27조, 제30조의5, 제60조, 제63조 및 제65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 동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 동법 제6조제2항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구 의 회 사무국장 보전소장 구 의 회 사무국장 보전소장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1. 의료보장증 제사용 확인 2. 의료보장증 회수 3. 장애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진단의회 나. 장애인등급의 조정 및 장애상태 확인 다. 등록증의 반환명령 라. 장애인증명서 발급 마.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자의 선정 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발급	○ 의료보호법 제7조 ○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9조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조 ○ 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 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동법시행규칙 제8조 ○ 동법시행규칙 제9조 ○ 동법 제34조 ○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 ○ 동법 제35조 ○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동 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4. 경로연금 지급 신청 관련 사항 가. 경로연금지급의 신청 및 지급 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다. 미지급 경로연금 지급청구 접수 및 지급 라.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 5. 시체매장· 화장 또는 개장신고 접수 처리	○ 노인복지법 제11조 ○ 동법시행규칙 제2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 동법 제13조 ○ 동법시행령 제17조 ○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동법 제21조 ○ 동법시행규칙 제6조 ○ 매장및그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5조의2 ○ 동법시행령 제1조	동 장
생활복지국 (산업위생과)	6. 농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농지법 제51조 ○ 동법시행령 제71조 ○ 동법시행규칙 제50조 내지 제52조 ○ 동법 제52조 ○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동 장

주 판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 건 소	<p>1. 전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전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보고</p> <p>나.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의 명령</p> <p>다. 정기 예방접종 실시</p> <p>라. 임시 예방접종 실시</p> <p>마. 예방접종의 공고</p> <p>바. 예방접종증명서 교부</p> <p>사.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작성·보관</p> <p>아. 예방접종에 관한 보고 접수처리</p> <p>자. 격리수용 의료기관등 장소 지정</p> <p>차. 제1군 전염병 환자(患者)에 대한 방역조치</p> <p>카. 소독조치</p> <p>타. 소독업무의 대행조치</p> <p>파. 예방접종 미보고자에 대한 파데로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p> <p>2. 기생충 예방을 위한 다음 사무</p> <p>가.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 및 검사</p> <p>나. 기생충 감염원의 관리</p> <p>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p> <p>나. 예방접종 실시 현황보고 접수처리</p>	<p>○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2</p> <p>○ 동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p> <p>○ 동법 제11조</p> <p>○ 동법 제12조</p> <p>○ 동법 제13조</p> <p>○ 동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p> <p>○ 동법 제2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p> <p>○ 동법 제2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p> <p>○ 동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p> <p>○ 동법 제37조</p> <p>○ 동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p> <p>○ 동법 제40조의2</p> <p>○ 동법 제21조제2항 및 제56조의2 동법시행령 제21조</p> <p>○ 기생충질환예방법 제4조</p> <p>○ 동법 제6조</p> <p>○ 결핵예방법 제1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p> <p>○ 동법 제1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p>	<p>보건소장</p>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4.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의 개설 신고수리	○ 의료법 제30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나. 의원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수리	○ 동법 제30조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다. 의원등의 폐업·휴업의 신고수리 및 폐업신고 수리사항의 보고	○ 동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보 전 소	라. 의원등의 업무개시 명령	○ 동법 제48조제2항	
	마. 의원등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	○ 동법 제49조	
	바. 의원등의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	○ 동법 제50조 및 제63조의2	
	사. 의원등의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	○ 동법 제51조,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	
	아. 의원등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 동법 제53조의2 ○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 동법시행규칙 제60조	
	자. 의원등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 동법 제71조 및 제72조 ○ 동법시행령 제35조 ○ 동법시행규칙 제60조 및 제61조	보건소장
	5. 의료지도원의 임명 및 해촉	○ 의료법 제54조 ○ 동법시행규칙 제48조 내지 제52조	
	6.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 제31조제1항본문 ○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리	○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6조	
	다.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	○ 동법 제50조 및 제63조의2	
	라.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동법 제51조,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	
	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동법 제53조의2 ○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 동법시행규칙 제60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진소	<p>7. 접골사, 점·구사의 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및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리</p> <p>나. 시술소의 폐업·휴업신고 수리</p> <p>다. 시술소의 업무개시 명령</p> <p>라. 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p> <p>마. 시술소의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p> <p>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p> <p>사. 시술소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p> <p>아. 시술소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p> <p>8.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p> <p>나. 시술소의 개설신고, 변경신고수리</p>	<p>○ 의료법 제30조제6항 및 제60조</p> <p>○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2조의2</p> <p>○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제17조</p> <p>○ 동법 제33조 및 제60조</p> <p>○ 동법시행규칙 제24조</p> <p>○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제17조</p> <p>○ 동법 제48조제2항 및 제60조</p> <p>○ 동법 제-9조 및 제60조</p> <p>○ 동법 제50조, 제60조 및 제63조의 2</p> <p>○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제17조</p> <p>○ 동법 제51조, 제53조의3, 제60조 및 제63조의2</p> <p>○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제17조</p> <p>○ 동법 제53조의2 및 제60조</p> <p>○ 동법 제60조, 제71조 및 제72조</p> <p>○ 동법시행령 제35조</p> <p>○ 동법시행규칙 제60조 및 제61조</p> <p>○ 의료법 제30조 제3항 및 제61조</p> <p>○ 동법시행규칙 제22조</p> <p>○ 동법 제30조제6항 및 제61조</p> <p>○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p>	보진소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건소	<p>다. 시술소의 폐업·휴업의 신고수리</p> <p>라. 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p> <p>마.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의료법 제32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p> <p>바. 시술소의 의료업적지·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p> <p>9. 안전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개설등록</p> <p>나. 폐업 및 개설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p> <p>다. 보고와 검사등</p> <p>라. 시정명령,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및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p> <p>마. 파태료부과 및 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p> <p>10.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인경</p> <p>나. 폐업 및 인경사항 변경신고 수리</p>	<p>○ 동법 제33조 및 제61조</p> <p>○ 동법시행규칙 제24조</p> <p>○ 동법 제49조 및 제61조</p> <p>○ 동법 제50조, 제61조 및 제63조의 2</p> <p>○ 동법 제51조, 제53조의3, 제61조 및 제63조의2</p> <p>○ 의료가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p> <p>○ 동법시행규칙 제13조</p> <p>○ 동법 제13조</p> <p>○ 동법시행규칙 제16조</p> <p>○ 동법 제15조</p> <p>○ 동법 제23조 내지 제26조</p> <p>○ 동법 제33조</p> <p>○ 동법시행령 제15조</p> <p>○ 동법시행규칙 제26조</p> <p>○ 의료가사등에관한법률 제2조</p> <p>○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4항</p> <p>○ 동시행규칙 제2조</p> <p>○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4항</p> <p>○ 동법시행규칙 제2조</p>	<p>보건소장</p>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건소	다. 양수신고 수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보건소장
	라. 업무사항 조사,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인정취소	○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및제5호 및 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5조	
	11.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 약사법 제16조 ○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나. 약국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	○ 동법 제20조 ○ 동법시행규칙 제84조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 동법 제33조 ○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9조	
	라.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승인	○ 동법 제41조	
	마. 보고와 검사등	○ 동법 제64조	
	바. 업무개시 명령등	○ 동법 제64조의2	
	사. 폐기명령등	○ 동법 제65조	
	아. 개수명령	○ 동법 제67조	
	자. 관리자등의 변경 명령	○ 동법 제68조	
	차. 등록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등, 그에 따른 청문	○ 동법 제69조 및 제69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89조	
	카. 약사 감시원의 임명 및 배치	○ 동법 제70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88조	
	타. 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교부	○ 동법 제71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93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건소	<p>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p> <p>12. 의료용구의 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신고 및 신고된 사항 변경등록 나. 보고와 검사등 다. 폐기 명령등 라. 개수 명령 마. 신고증의 재교부 바. 신고취소와 영업정지등, 그에 따른 청문 사.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처리</p> <p>13.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설치 및 사용신고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 또는 폐기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 신고처리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대상 작성·비치 및 관리</p>	<p>○ 약사법 제71조의3 ○ 동법시행령 제30조 ○ 동법시행규칙 제91조</p> <p>○ 동법 제79조 ○ 동법시행령 제31조 ○ 동법시행규칙 제91조</p> <p>○ 약사법 제42조 ○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및 제60조 ○ 동법 제64조 ○ 약사법 제65조</p> <p>○ 동법 제67조</p> <p>○ 동법시행규칙 제93조</p> <p>○ 동법 제69조 및 제69조의 2</p> <p>○ 동법 제79조 ○ 동법시행령 제31조 ○ 동법시행규칙 제91조</p> <p>○ 의료법 제32조의2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p> <p>○ 동법 제32조의2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p> <p>○ 동법 제32조의2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3항</p> <p>○ 동법 제32조의2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4항</p>	<p>보건소장</p>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p>마.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상태 지도·감독</p> <p>바. 과태료부과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p> <p>사.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및 시정명령등과 그에 따른 청문</p>	<p>○ 동법 제32조의2</p> <p>○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p> <p>○ 동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p> <p>○ 동법시행령 제35조</p> <p>○ 동법시행규칙 제60조 및 제61조</p> <p>○ 동법 제32조의2, 제50조 및 제63조의2</p>	